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159호

**일원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1997-2호(1997.06.18.)로 조합설립인가되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4 -111호(2014.10.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5-99호(2015. 08.0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5-151호(2015.11.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6-58호(2016.04.29.)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일원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일원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89-1 일대
- 구역면적 : 44,369.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일원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성원)

○ 주 소 : 강남구 일원동 689-1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8년 11월 2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m ²)	동 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m ²)
계		38,587.60	12	지하3층/지상25층	855	154,730.26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	36,970.27	12	지하3층/지상25층	800	148,478.61
	임대	1,540.39			50	5,943.17
상가		76.94			5	308.48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세대수											
	계	49m ²	59m ²	71m ²	84m ²	101m ²	118m ²	121m ²	168m ²	146(P)m ²	151(P)m ²	157(P)m ²
계	850	42	168	102	293	138	7	94	2	1	2	1
토지등소유자	465	—	18	44	227	119	7	45	1	1	2	1
보류시설	3	—	1	1	—	—	—	1	—	—	—	—
일반분양	332	—	141	57	66	19	—	48	1	—	—	—
임 대	50	42	8	—	—	—	—	—	—	—	—	—

다. 정비기반시설

소 계	도 로(m ²)	연결녹지(m ²)	문화시설(m ²)
5,782.30	2,790.10	2,228.20	764.00

라 총소요 사업비, 수입추산액

자금운용	총소요 사업비	수입추산액
	354,796,896,500원	886,488,985,800원

6.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93) 및 일원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459-012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160호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남 구 청 장

1. 명 칭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2. 목 적 :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
3. 협의회의 기능
 - 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 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 다.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 라.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마.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4. 고시방법 : 구보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붙임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1부. 끝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5. 그 밖에 본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② 공동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동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공동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공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공동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존망 받는 인사로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

1.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마을만들기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주관하고, 회의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회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해산) 협의회회 해산될 때 그 재산은 유사 협의회회 혹은 법인에 귀속된다.

제21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4개

시도명	직위	단체장명	시도명	직위	단체장명
서울특별시	시 장	박원순	경 기 도	도지사	이재명
광주광역시	시 장	이용섭	강 원 도	도지사	최문순

○ 기초자치단체 : 59개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단체장명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단체장명
1	서울특별시 (19)	강북구	박겸수	30	경기도 (12)	광명시	박승원
2		강동구	이정훈	31		군포시	한대희
3		강서구	노현송	32		구리시	안승남
4		관악구	박준희	33		김포시	정하영
5		광진구	김선갑	34		부천시	장덕천
6		구로구	이 성	35		수원시	염태영
7		금천구	유성훈	36		성남시	은수미
8		노원구	오승록	37		시흥시	임병택
9		도봉구	이동진	38		안산시	윤화섭
10		동대문구	유덕열	39		안성시	우석제
11		동작구	이창우	40		오산시	곽상욱
12		마포구	유동균	41		이천시	엄태준
13		서대문구	문석진	42	강원도 (3)	강릉시	김한근
14		성동구	정원오	43		정선군	최승준
15		성북구	이승로	44		평창군	한왕기
16		양천구	김수영	45	충남(3)	논산시	황명선
17		은평구	김미경	46		아산시	오세현
18		종로구	김영중	47		천안시	구본영
19		중랑구	류경기	48	전북(6)	고창군	유기상
20	인천광역시 (2)	미추홀구	김정식	49		무주군	황인홍
21		부평구	차준택	50		완주군	박성일
22	광주광역시 (4)	광산구	김삼호	51		전주시	김승수
23		남구	김병내	52		정읍시	유진섭
24		북구	문인	53		진안군	이항로
25		서구	서대석	54	전남(2)	담양군	최형식
26	대전광역시 (3)	대덕구	박정현	55		해남군	명현관
27		서구	장종태	56	경남(4)	거창군	구인모
28		유성구	정용래	57		사천시	송도근
29	울산광역시(1)	동구	정천식	58		함안군	조근제
				59		합천군	문준희